

『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1988년부터 운영해 오던 「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」이 인근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입점으로 더 이상의 존치 유명무실
- 「구미시 근로자 대형 구판장」을 「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」로 전환 운영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

3. 주요내용

-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(안 제2조)
-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사업(안 제3조)
-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사용자 범위(안 제4조)
-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(안 제5조)
-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위탁(안 제6조)
- 근로자 권익지원센터의 지도 감독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
 - 현재 휴점 상태에 있는 「근로자 대형 구판장」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「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」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」의 운영 사업, 사용자 범위, 운영, 위탁, 지도 감독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
 - 상위 법령에 위반됨은 없으나, 위탁 운영 및 지원, 지도·감독 등 시행상 제기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